

# 건양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권리장전은 지식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.

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연구하고,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라 함은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, 전공과정의 재적생을 말한다.

##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
**제3조(자기 결정권)**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연구와 학업은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
**제4조(학업연구권)**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,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, 연구,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.

④ 대학원생의 석·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5조(저작권)**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
**제6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
**제7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**제8조(조교의 권리)** 대학원생을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, 근로내용에 따른 임금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

**제9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**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**제10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**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의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그 사유의 적절성을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, 변경 전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,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1조(해결절차)**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, 대학원은 해당문제와 문제해결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
**제12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**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.

**제13조(그 밖의 권리)**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### 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

**제14조(연구 및 학습에 대한 의무)** ①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.

**제15조(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)** ① 대학원생은 건양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,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 간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들을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중히 대우 할 책임이 있다.

### 부 칙

위 권리장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